

행정처분의 기준(제5조 관련)

구 분	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처 분 내 용	
			대행자 또는 사업자	기술종사원
1. 등 록 번 호 판 발급 대 행자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1호	지정취소	
	나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2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지정취소	
	다.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3호	지정취소	
	라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를 한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4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	마.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하거나,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5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	바. 업무와 관련하여 부 정한 금품을 수수(收 受)하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6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	사.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 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7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	아. 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한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8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지정취소	
	자. 국토교통부장관이 등 록번호판의 규격·재 질·색상 등 제식(制 式)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 작·발급한 경우	법 제21조제1 항제9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지정취소	

	차.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	법 제21조제1항제10호	지정취소	
2. 대체부품 인증기관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·품질 인증을 한 경우 다.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. 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·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마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바.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2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3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5호 법 제30조의6제1항제6호	지정취소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3. 튜닝부품 인증기관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다.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	법 제34조의4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 법 제34조의4제1항제3호	지정취소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
	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라.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마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바.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34조의4 제1항제4호 법 제34조의4 제1항제5호 법 제34조의4 제1항제6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4. 자동차 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.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.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,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마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·기구로 검사를 하거나,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 제2항제1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 제2항제2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 제2항제3호	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 ①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② 다르게 작성 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60일 2차: 해임 해임 1차: 직무정지 60일 2차: 해임 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해임

바.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직무정지 60일 3차: 해임
사. 법 제43조제3항(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20일 3차: 업무정지 3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20일 3차: 직무정지 30일
아. 법 제43조제6항(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6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: 직무정지 60일
자. 법 제43조제7항(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·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·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·변경하거나 조작·변경하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8호의2	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지정취소	
차.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	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60일 2차: 해임
카.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0호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지정취소	
타.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	법 제45조의3 제1항제10호	①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	

을 신청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 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	의2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90일 3차: 지정취소 ②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: 업무정지 90일	
파.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 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 제2항제8호	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업무정지 90일 3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60일 2차: 직무정지 90일 3차: 해임
하. 법 제45조제7항(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을 위반하여 다 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 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2호	지정취소	
거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3호	지정취소	
너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4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
더. 법 제46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 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2 항제9호		직무정지 10일
러. 법 제66조에 따라 자 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이 취소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5호	지정취소	
며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6호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
버. 법 제72조제2항에	법 제45조의3	1차: 업무정지 30일	

	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서.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	제1항제17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18호	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	
5. 택시미터 전 문검정기관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.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. 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마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·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바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.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	법 제47조제5항제1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법 제47조제5항제3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법 제47조제5항제5호 법 제47조제5항제6호 법 제47조제5항제7호	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90일 3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지정취소 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90일 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90일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

	경우 아. 법 제47조에 따른 업 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 정업무를 한 경우	법 제47조제5 항제8호	지정취소	
6. 자동차 관 리 사 업자 가. 공통 사항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)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 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) 법 제53조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변경한 경우 4) 법 제53조제3항에 따 른 등록기준에 미달하 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) 법 제55조제1항을 위 반하여 등록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·양수 또는 합병 한 경우 6) 법 제56조제1항에 따 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)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 한 경우 가) 다른 사람에게 자신 의 명의로 사업을 하 게 하는 행위 나)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 게 임대하거나 점용 하게 하는 행위	법 제66조제1 항제1호 법 제66조제1 항제2호 법 제66조제1 항제3호 법 제66조제1 항제4호 법 제66조제1 항제5호 법 제66조제1 항제6호 법 제66조제1 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 항제1호 법 제66조제1 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 항제2호	등록취소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 ① 사업장의 전부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 ② 사업장의 일부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	

		3차: 사업정지 90일
다)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	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3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라)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	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4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마)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	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5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등록취소
8)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·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8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20일 3차: 사업정지 30일
9)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0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10)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,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1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
11)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5호	등록취소
12)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9항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	법 제66조제1항제16호	등록취소

	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			
나. 자동 차 매 매 업자	13)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)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 우 나) 법 제57조제3항제1 호를 위반하여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 차의 매매 알선을 의 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다) 법 제57조제3항제2 호를 위반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 려는 자동차에 관하 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·광고를 한 경 우 라) 법 제58조제1항제1 호 또는 제2호를 위 반하여 고지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고지 한 경우 마)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·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않 은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·상태 의 점검을 받은 경우 바) 법 제58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보증보 험에 가입하지 않거 나, 공탁을 하지 않 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	법 제66조제1 항제12호가목 법 제66조제1 항제12호나목 법 제66조제1 항제12호다목 법 제66조제1 항제12호라목 법 제66조제1 항제12호마목 법 제66조제1 항제9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60일	

	사) 법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아)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자)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다. 자동차 정비업자	14) 정비책임자가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15)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삭제 <2018. 6. 28.> 나)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·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)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. 다만,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	법 제64조제3항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: 직무정지 90일

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.		
라)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 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 동차를 정비한 경우	법 제66조제1 항제13호라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마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 (법 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·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, 승인 을 받은 내용과 다르 게 자동차의 구조· 장치를 변경한 경우	법 제66조제1 항제13호마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바)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 항제13호사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사)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 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 항제13호아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아)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 의 해임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 항제13호자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자)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 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 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송하 는 경우	법 제66조제1항 제13호차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
라.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	16)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)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)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)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마) 법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 바)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4호가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제라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바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7. 자동차제작자	가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	법 제66조제2항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	

등	이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		3차: 사업정지 90일	
8.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나.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.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. 법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, 자동차등록번호,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, 최종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마. 법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	법 제66조제4항제1호 법 제66조제4항제2호 법 제66조제4항제3호 법 제66조제4항제4호 법 제66조제4항제5호	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	
9. 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자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나.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라. 법 제58조제2항에	법 제66조제5항제1호 법 제66조제5항제2호 법 제66조제5항제3호 법 제66조제5	사업장 폐쇄 사업장 폐쇄 사업장 폐쇄 1차: 사업정지 10일	

	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	항제4호	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장 폐쇄
	마.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5호	
	1) 자동차성능·상태 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	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	2) 거짓으로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	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사업장 폐쇄
	3) 자동차성능·상태 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	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	바.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·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6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20일 3차: 사업정지 30일
	사. 법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·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7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사업장 폐쇄
	아. 법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한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8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60일